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대 도시 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있어, 리모델링사업의 경우에도 동일 기준 적용으로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여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시 리모델링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는 규정 신설(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제6호 및 제7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6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⑦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은 동일 건축물에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리모델링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산정기준 적용례) 제16조의2제6항제6호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 또는 인가 등(변경승인 또는 변경인가 등은 제외한다)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 ⑤ (생 략)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 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 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⑥-----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u><신 설></u>	⑦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은 동일 건축물에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리모델링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생활교통복지과	
연 락 처	(044) 201 - 3812